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186호 2009. 1. 21 (수)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09-2호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 정선군고시 제2009-3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 3
○ 정선군고시 제2009-4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7
○ 정선군고시 제2009-5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 8
○ 정선군고시 제2009-6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 9
○ 정선군고시 제2009-7호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 10
○ 정선군고시 제2009-9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12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09-10호 예방접종공고 ····· 13
○ 정선군공고 제2009-11호 정선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4
○ 정선군공고 제2009-19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 19
○ 정선군공고 제2009-20호 2009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 21
○ 정선군공고 제2009-2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 공표 ····· 22
○ 정선군공고 제2009-30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23
○ 정선군공고 제2009-31호 2009년 정선군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계획 공고 ····· 24
○ 정선군공고 제2009-35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통지 공시송달공고 ····· 52
○ 정선군공고 제2009-38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 5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고시 제2009-2호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고시 제98호(1979.09.25)로 결정 고시된 고한 중·고등학교내 다목적실 신축에 따른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승인 결정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제9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 2.

정 선 군 수

가. 결정취지 : 고한 중·고등학교 통합 운영에 따른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한 중·고등학교내 다목적실 신축에 따른 군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나. 위 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80번지 일원(고한 중·고등학교)

다.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 별첨조서 참조

라.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비치)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사항 없음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7	고 한 중·고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고한리 80번지 일원	13,760	증)1,760	15,520	강고 제98호 (79. 9. 25)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7	고 한 중고등학교	• 변 경 : 학교시설 확장 • 면 적 - 기정 : 13,760㎡ - 변경 : 15,520㎡(증 : 1,760㎡)	- 고한지역 중·고교 통합계획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다목적실 설치)을 위한 시설결정(변경)

정선군고시 제2009-3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1. 06.
정 선 군 수

지적측량기준점 명칭 및 번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m)	경위도	
	X(m)	Y(m)		경도(L)	위도(B)
정선소도1096~ 정선소도1196	“별	지	첨	부“	
기 준 점 원 명	동부원점				
소 재 지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임계면일원				
측 량 연 월 일	2008. 11. 11				
측량성과보관장소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비 고	지적도근점 신설(101점)				

지적측량기준점 명칭 및 점번호	기준점 소재지	평면직각종회선 수치		경로
		X(m)	Y(m)	
정선소도1096	신동읍 예미리 429-4	411090.27	166508.98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097	신동읍 예미리 431-4	411163.02	166667.43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098	신동읍 예미리 31-4	411232.13	166817.93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099	신동읍 예미리 437	411311.79	166991.30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00	신동읍 예미리 291-3	411386.85	167154.72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01	신동읍 예미리 250-2	411463.87	167321.64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02	신동읍 예미리 251-3	411555.90	167473.87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03	신동읍 예미리 244-3	411626.81	167554.86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04	신동읍 예미리 836-2	411756.08	167660.05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05	신동읍 예미리 187-3	411448.73	167753.19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06	신동읍 예미리 880-1	411575.19	167837.80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07	신동읍 예미리 866-1	411807.38	167952.01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08	신동읍 예미리 857-1	411919.40	167915.24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09	신동읍 예미리 852-5	411890.05	167775.54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10	신동읍 예미리 892-76	411846.70	167715.95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11	신동읍 예미리 829	411994.73	167801.80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12	신동읍 예미리 820-3	412147.45	167884.80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13	신동읍 예미리 818	412285.63	167957.23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14	신동읍 예미리 764-4	412401.91	168021.91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15	신동읍 예미리 697-10	412555.91	168107.12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16	신동읍 예미리 697-2	412709.65	168192.41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17	신동읍 예미리 696	412858.04	168255.56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18	신동읍 예미리 668-14	412046.26	168260.65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19	신동읍 예미리 668-8	413002.59	168324.66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20	신동읍 예미리 691-2	412838.49	168378.46	예미-천포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21	신동읍 예미리 718-5	412713.96	168374.48	예미-조동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22	신동읍 예미리 714-1	412606.49	168388.61	예미-조동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23	신동읍 예미리 731-19	412518.60	168395.76	예미-조동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24	신동읍 예미리 737-4	412404.92	168408.14	예미-조동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25	신동읍 예미리 737-29	412305.76	168325.71	예미-조동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26	신동읍 예미리 752-1	412220.91	168229.43	예미-조동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27	신동읍 예미리 746-17	412174.90	168325.17	예미-조동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28	신동읍 예미리 746-27	412212.34	168445.05	예미-조동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29	신동읍 예미리 742-9	412270.75	168575.12	예미-조동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30	신동읍 예미리 193-2	412315.03	168697.22	예미-조동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31	신동읍 예미리 200-2	412342.52	168798.85	예미-조동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32	신동읍 예미리 200-10	412365.36	168906.03	예미-조동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33	신동읍 예미리 132-6	412396.04	169057.05	예미-조동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34	신동읍 예미리 132-51	412438.71	169196.84	예미-조동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35	신동읍 예미리 122-3	412480.88	169363.40	예미-조동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36	신동읍 예미리 119-42	412517.79	169510.69	예미-조동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37	신동읍 조동리 258	412323.60	169693.28	예미-조동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38	신동읍 조동리 산97-14	412185.22	169750.76	예미-조동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39	신동읍 조동리 산97-14	412084.83	169871.21	예미-조동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40	신동읍 조동리 263-2	412060.72	169925.84	예미-조동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41	신동읍 조동리 산95-6	412032.10	170030.35	예미-조동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42	신동읍 조동리 산95-19	412020.68	170164.70	예미-조동간지적도근 설치
정선소도1143	임계면 봉산리 318-1	441983.98	186491.07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44	임계면 봉산리 318-1	442145.08	186423.33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45	임계면 봉산리 646-1	442334.00	186333.96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46	임계면 봉산리 302-3	442672.65	186249.12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47	임계면 봉산리 244-3	442953.02	186247.05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48	임계면 봉산리 614-1	443230.65	186305.12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49	임계면 봉산리 240-3	443347.93	186390.92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50	임계면 봉산리 산79-2	443481.38	186573.05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51	임계면 송계리 761-6	443604.14	186651.75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52	임계면 송계리 640-2	443720.73	186679.69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53	임계면 송계리 772-2	443687.42	186775.20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54	임계면 송계리 773-8	443661.63	186847.61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55	임계면 송계리 711-3	443742.90	186868.76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56	임계면 송계리 957-2	443730.41	186966.57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57	임계면 송계리 952-1	443876.08	186972.57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58	임계면 송계리 678-1	443899.27	186841.83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59	임계면 송계리 732-9	443910.91	186766.19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60	임계면 송계리 722-1	443762.17	186745.97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61	임계면 송계리 640-2	443771.88	186678.53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62	임계면 송계리 640-2	443914.40	186698.34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63	임계면 송계리 579-72	443919.38	186625.68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64	임계면 송계리 634-1	444032.80	186674.18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65	임계면 송계리 657-25	444026.65	186726.28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66	임계면 송계리 657-3	444136.64	186740.27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67	임계면 임계리 494-4	445655.92	189822.62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68	임계면 임계리 495-4	445559.02	189715.48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69	임계면 임계리 495-4	445499.21	189562.87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70	임계면 임계리 592-4	445432.52	189420.87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71	임계면 임계리 501-3	445300.15	189270.90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72	임계면 임계리 산155-2	445173.19	189226.20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73	임계면 임계리 630-2	444897.68	189236.94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74	임계면 임계리 658-2	444708.33	189131.49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75	임계면 임계리 658-2	444659.82	188998.40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76	임계면 임계리 687-7	444694.99	188903.09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77	임계면 임계리 687-9	444768.07	188761.14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78	임계면 임계리 605-1	444768.63	188648.60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79	임계면 임계리 705-5	444694.17	188541.39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80	임계면 임계리 48-23	444542.49	188359.20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81	임계면 송계리 207-2	444390.18	188260.92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82	임계면 송계리 229-2	444226.73	188135.02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83	임계면 송계리 1165	444179.34	188285.80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84	임계면 송계리 1195	443916.05	188233.99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85	임계면 송계리 1095	443916.41	188050.81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86	임계면 송계리 253-13	443909.96	187875.08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87	임계면 송계리 278-7	443663.08	187754.53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88	임계면 송계리 278-7	443556.04	187581.99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89	임계면 송계리 1007-1	443563.51	187325.15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90	임계면 송계리 959-1	443568.93	187161.77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91	임계면 송계리 978-1	443564.94	186961.42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92	임계면 송계리 793-3	443573.30	186813.35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93	임계면 송계리 640-2	443604.93	186734.63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94	임계면 송계리 640-2	443705.78	186544.85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95	임계면 송계리 803-5	443776.01	186368.50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소도1196	임계면 송계리 241-52	443511.58	186278.04	송계리-봉산리일대 설치

정선군고시 제2009-4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1. 06.
정 선 군 수

시행(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삼하건설(주)		
	대 표 자	박 창 호	주 소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12-3번지
하 천 명		공유수면		
공사(점용·사용)개요	위 치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77-1구(97-2번지선)		
	허가량	A = 7,697㎡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8년 10월 01일 ~ 2010년 04월 30일		
	목 적 및 사 유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배수로(공작물) 설치		
기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번호 제2009 - 01호 (2009년 01월 05일 허가처리됨)				

정선군고시 제2009-5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규정에 따라 세대주 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9. 01. 09.
정 선 군 수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A4용지 1매기준)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A4용지 100매기준)	비 고
○ **합 계 : 53.01원** -용 지 대 : 5.41원 -소모품비 : 24.60원 -기타경비 : 23원	○ **합 계 : 2,518원** -플로피디스크(1개) : 218원 -기타경비 : 2,300원 ※ CD-RW(1개) : 980원	

※전산자료 복사본비용은 플로피디스크 기준 금액
※기타비용은 전기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기타 소요비용

정선군고시 제2009-6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사용 변경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1. 08.
정 선 군 수

시행(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윤 증 갑	주 소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57번지
하 천 명		공유수면		
공사(점용·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441-2구(438-3번지선)		
	허가량	A = 329 ㎡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9년 01월 01일 ~ 2011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농경지 사용		
기타: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번호 제2009 - 02호 (2009년 01월 08일 변경허가 처리됨)				

정선군고시 제2009-7호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산불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1. 통제기간

가. 봄 철 : 2009. 2. 1 ~ 5. 15(105일간)

나. 가을철 : 2009. 11. 1 ~ 12. 15(45일간)

※ 산불조심 기간 중 전 산림에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을 금지합니다.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현황

가. 입산통제구역 지정 : 정선군 관내 민유림 - 38,280ha

나.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현황

구분 / 읍면	계		관리등급별 지정현황				비 고
			A 등 급		B 등 급		
	노선수	구간거리(km)	노선수	구간거리	노선수	구간거리	
정선읍	3	7.7	1	1.6	2	6.1	○ 산불경계경보발령시 - 관리등급 B통제 (8개노선 35.3km) ○ 산불위험경보발령시 - 관리등급 A·B통제 (14개노선 71.4km)
고한읍	5	27.2	2	8.0	3	19.2	
사북읍	-	-	-	-	-	-	
신동읍	1	6.0	1	6.0	-	-	
동 면	1	6.0	1	6.0	-	-	
동·남면	1	14.5	1	14.5	-	-	
남 면	1	7.0	-	-	1	7.0	
북 면	-	-	-	-	-	-	
북평면	-	-	-	-	-	-	
임계면	2	3.0	-	-	2	3.0	
계	14	71.4	6	36.1	8	35.3	

3. 기타사항

가. 산불조심 기간 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입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므로 입산신고를 하지 않고 입산 할 수 있습니다.

2009. 1. .

정 선 군 수

2009년 산불조심기간 등산로 폐쇄구역

◎ 9개 등산로 14개노선 71.4km

- A등급 : 6개노선 36.1km
- B등급 : 8개노선 35.3km

등 산 로 명	위 치	등 산 코 스	구간거리	해발높이	관리등급
조양산 등산로	정선읍	성불사입구⇔정상	1.6	620	A
		신월리⇔정상	4.7		B
		구 아리랑볼링장⇔정상	1.4		B
함백산 등산로	고한읍	싸리재⇔정상⇔만항재	8.7	1,573	B
		정암사⇔적조암⇔만항재	7.5		B
물한이골 등산로		물한이골⇔강원랜드숙소	2.0	1,150	A
못골 등산로		못골아파트⇔은대봉	3.0	1,442	B
막골 등산로		약수암⇔골프텔	6.0	1,426	A
백운산 등산로	신동읍	점재⇔백운산 정상⇔제장마을	6.0	883	A
민둥산 등산로	남 면	고병골⇔민둥산 정상	7.0	1,118	B
	동·남면	증산초교⇔민둥산 정상⇔불암사	14.5		A
몰운대 등산로	동 면	화암약수⇔설암⇔몰운리	6.0	700	A
장찬성 등산로	임계면	봉산1리⇔장찬성 정상	1.6	582	B
		송계솔밭⇔장찬성 정상	1.4		B
9개 등산로		14개 코스	71.4		

정선군고시 제2009-9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1. 15.
정 선 군 수

시행(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김 상 수	주 소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148-4번지
하 천 명		공유수면		
공사(점용·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196-1구(148-8번지선)		
	허가량	A = 1,276㎡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9년 01월 08일 ~ 2011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주택 관리부지(677㎡) 및 농경지(599㎡) 사용		
기타: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번호 제2009 - 03호 (2009년 01월 14일 허가처리됨)				

정선군공고 제2009-10호

예 방 접 종 공 고

전염병예방법 제 13조 및 결핵예방법 제15조에 의거 2009년 시행할 예방접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1. 07

정 선 군 수

접종명	대 상	접종일시	장 소	수수료	비 고
비시지	생후4주이내	매주목요일	보건소	무료	오전접종 (10:00~12:00)
		매주수요일	고한사북,신동,임계지소		
소아마비	생후2,4,6개월 (3회) 만4~6세(1회)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오전접종 (09:00~12:00)
		매주수요일	신동,동면,남면,북면,임계지소		
		매주화요일	북평지소		
디피에이피	생후2,4,6개월 (3회) 생후18개월 (1회) 만4~6세(1회)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
		매주수요일	신동,동면,남면,북면,임계지소		
		매주화요일	북평지소		
엠엠알 (홍역,볼거리,풍진)	생후12~15개월 (1회) 만4~6세(1회)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
		매주수요일	신동,동면,남면,북면,임계지소		
		매주화요일	북평지소		
수두	생후12~15개월 (1회)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
		매주수요일	신동,동면,남면,북면,임계지소		
		매주화요일	북평지소		
B형간염	0~65세	매주월~금요일	보건소 보건지소	소인:1.600원 대인:3,360원	영유아 오전접종 (09:00~12:00)
일본뇌염	만1~12세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매주수요일	신동,동면,남면,북면,임계지소		
		매주화요일	북평지소		
티디	만11세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매주수요일	신동,동면,남면,북면,임계지소		
		매주화요일	북평지소		
장티프스	만5~65세	매주월~금요일	보건소 보건지소	무료	식품접객업소종사자,불완전급수지역주민대상 접종
유행성 출혈열	중학생이상	매주월~금요일	보건소 보건지소	무료	농업,임업종사자 야외활동이 많은 주민대상접종
독감	만3세이상주민	매년10~12월	보건소 보건지소	5,000원	매년수수료변경

※지참물 : 의료보험카드, 모자보건수첩

정선군공고 제2009-11호

정선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8. 01. 08.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단순한 방위 명칭 등으로 지역의 특수성 표현이 부족한 읍·면 명칭을 각 읍면의 역사성과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함으로써 지역명칭의 브랜드화 및 관광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정선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 대한 띄어쓰기와 읍·면 명칭을 규정하기 위해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 읍·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함.**(안 제1조, 제2조)**

○ 조례중 "다음과 같이 정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하고 별표중 "동면"을 "화암면"으로, "북면"을 "여량면"으로 개정함. **(안 제2조, 안 별표)**

○ 부칙에서 다른 조례중 "동면"을 "화암면"으로, "북면"을 "여량면"으로 개정함**(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560-2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붙 임 정선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리의 명칭”을 “읍·면·리의 명칭”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과 구역)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각 란중 “동면”을 각각 “화암면”으로 하고, “북면”을 각각 “여량면”으로 한다.

②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각 란중 “동면”을 각각 “화암면”으로 하고, 북면”을 각각 “여량면”으로 한다.

③정선군 이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읍면란 중 “동면”을 “화암면”으로 하고, “북면”을 “여량면”으로 한다.

④ 정선군 향토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중 “동면”을 “화암면”으로 한다.

⑤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해당지역란 중 “북면”을 각각 “여량면”으로 한다.

⑥정선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읍면란 중 “동면”을 “화암면”으로 하고, “북면”을 “여량면”으로 한다.

【별표】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제2조와 관련)

읍 면 명	리 명 칭	구 역
정 선 읍	봉 양 리	봉양리 일원
	북 실 리	북실리 일원
	덕 송 리	덕송리 일원
	애 산 리	애산리 일원
	신 월 리	신월리 일원
	덕 우 리	덕우리 일원
	회 동 리	회동리 일원
	용 탄 리	용탄리 일원
	광 하 리	광하리 일원
	귤 암 리	귤암리 일원
고 한 읍	고 한 리	고한리 일원
사 북 읍	직 전 리	직전리 일원
	사 북 리	직전리 일원
신 동 읍	예 미 리	예미리 일원
	천 포 리	천포리 일원
	조 동 리	조동리 일원
	방 제 리	방제리 일원
	가 사 리	가사리 일원
	고 성 리	고성리 일원
	덕 천 리	덕천리 일원
	운 치 리	운치리 일원
화 암 면	화 암 리	화암리 일원
	석 곡 리	석곡리 일원
	북 동 리	북동리 일원
	몰 운 리	몰운리 일원

읍 면 명	리 명 칭	구 역
화 암 면	건 천 리	건천리 일원
	호 촌 리	호촌리 일원
	백 전 리	백전리 일원
남 면	문 곡 리	문곡리 일원
	무 릉 리	무릉리 일원
	유 평 리	유평리 일원
	낙 동 리	낙동리 일원
	광 덕 리	광덕리 일원
여 량 면	여 량 리	여량리 일원
	유 천 리	유천리 일원
	구 절 리	구절리 일원
	남 곡 리	남곡리 일원
	고 양 리	고양리 일원
	봉 정 리	봉정리 일원
북 평 면	장 열 리	장열리 일원
	북 평 리	북평리 일원
	남 평 리	남평리 일원
	문 곡 리	문곡리 일원
	고 양 리	고양리 일원
	나 전 리	나전리 일원
	숙 암 리	숙암리 일원
임 계 면	가 목 리	가목리 일원
	도 전 리	도전리 일원
	직 원 리	직원리 일원
	임 계 리	임계리 일원
	송 계 리	송계리 일원
	봉 산 리	봉산리 일원
	낙 천 리	낙천리 일원
	용 산 리	용산리 일원
	골 지 리	골지리 일원
	덕 암 리	덕암리 일원
	고 양 리	고양리 일원
	반 천 리	반천리 일원

관계법령 발췌서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정선군공고 제2009-19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규정된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동 법률 제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 합니다.

2009. 01. 08.
정 선 군 수

□ 주민소환투표 주민청구권자 총수

(단위 : 명)

시군명	19세이상 주민수			선거권이 없는 자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정선군	34,498	34,487	11	162	162	0	34,336	34,325	11

※ 2008. 12. 31현재 기준

□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 자치단체장(군수) : 5,150명

(단위 : 명)

선거구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총수	서명인수	비 고
정선군수	34,336	5,150	
정 선 읍	9,336	344	
고 한 읍	4,594	344	
사 북 읍	4,847	344	
신 동 읍	3,506	344	
동 면	1,505	226	
남 면	2,767	344	
북 면	2,024	304	
북 평 면	2,364	344	
임 계 면	3,393	344	

※ 서명인수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 3개 읍면이상에서 각각 읍면별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지방의회의원 : 가선거구 3,725명, 나선거구 3,143명

(단위 : 명)

읍 면 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청구권자 총수	비 고
가선거구	**18,622**	**3,725**	
정 선 읍	9,336	187	
동 면	1,505	187	
북 면	2,024	187	
북 평 면	2,364	187	
임 계 면	3,393	187	
나선거구	**15,714**	**3,143**	
고 한 읍	4,594	158	
사 북 읍	4,847	158	
신 동 읍	3,506	158	
남 면	2,767	158	

※ 서명인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 2개 읍면이상에서 각각 읍면별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정선군공고 제2009-20호

2009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정선군 주민 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다 음 -

(단위 : 명)

구 분	계	내국인	외국인	비 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	33,855	33,844	11	

※ 내국인 :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정선군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외국인 :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정선군에 등록이 되어있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

2009. 01. 08.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09-2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정선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세 이상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 01. 08.
정 선 군 수

(단위 : 명)

읍 면 별	총 주민수	19세 이상 주민 총수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수
계	**41,269**	**34,487**	**162**	**34,325**
정 선 읍	11,828	9,366	33	9,333
고 한 읍	5,243	4,622	29	4,593
사 북 읍	5,991	4,881	34	4,847
신 동 읍	4,109	3,518	16	3,502
동 면	1,775	1,512	8	1,504
남 면	3,335	2,779	12	2,767
북 면	2,302	2,031	8	2,023
북 평 면	2,771	2,377	13	2,364
임 계 면	3,915	3,401	9	3,392

정선군공고 제2009-30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58조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시송달내역

업소명	업주명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할사항	법적근거
육이삼삼한방족발보쌈	안미숙	고한읍 고한리152-1	6월 이상 장기휴업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58조3항 위반
단합대회	이미정	신동읍 조동리 139	6월 이상 장기휴업	영업소폐쇄	
산장가든	최옥숙	신동읍 조동리379-47	6월 이상 장기휴업	영업소폐쇄	

2 공고기간 : 2009. 01. 13 - 01. 27 (15일간)

3. 청문일시 : 2009. 01. 28. 10:00-12:00

4. 청문장소 : 정선군청 청문실

5. **유의사항** : 위 공고기간 까지 정선군보건소 위생담당을 경유하신 후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시행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정선군보건소 위생담당(033-560-2747)

2009. 01. 13.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09-31호

2009년 정선군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계획 공고

사회복지기금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 정선군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9. 01. 13.
정 선 군 수

1. 사업기간 : 2009. 2. 23 ~ 2009.12. 31
2. 지원규모 : 총 127,000천원
   가. 자활계정 : 30,000천원
   나. 장애인복지계정 : 18,000천원
   다. 아동복지계정 : 14,000천원
   라. 노인복지계정 : 35,000천원
   마. 여성발전계정 : 30,000천원
3. 지원대상사업

계 정 별	지원대상사업	비고
자활계정	o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 o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o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장애인복지계정	o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o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사업 o 장애인단체 육성사업	
아동복지계정	o 아동복지 증진 및 육성사업 o 아동교육, 상담 및 지도활동 관련사업 o 아동학대 및 비행청소년 예방사업	
노인복지계정	o 노인복지 증진사업 o 효도,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o 노인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관련사업 o 노인단체 육성사업	
여성발전계정	o 여성복지 증진사업 o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관련사업 o 여성단체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사업	

《제외대상》

o 구체성 결여 등 사업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o 사업내용 구성에 있어 수혜대상 등 불분명한 사업

o 연구, 조사, 장학사업 등 단순 재정적 지원사업이나 자산구입 위주의 사업

4. 지원사업 신청자격

가. 정선군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단위 민간단체 및 공익기관

나. 자활 · 장애인 · 아동,청소년 · 노인 및 여성복지분야, 기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관련단체 및 기관

《제외대상》

o 군단위 민간단체 및 기관의 하부조직인 지회, 지부

o 읍면단위 민간단체 및 기관

o 순수 종교활동 단체, 영리추구 단체 및 단순한 친목단체

5.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09.1.13. ~ 2009.1.30.

나. 접수장소 :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실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신청자 직접 내방 접수

6. 신청서류

가. 기금보조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나. 사업계획서 및 단체(기관)소개서 등 1부 [별지 제2호서식]

7. 심사 및 통보

가. 정선군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사 · 선정

나. 결과통보 : 2009. 2월(개별통지)

8. 기금보조금 지급 및 정산

가. 보조금 지급 : 심사결과 지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교부 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예금통장 사본 등을 선정된 사업의 계정별 담당부서에 제출 후 교부결정

나. 정 산 : 사업완료시 사업추진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실(☎560-2128)로 문의바람.

[별지 제1호서식]

기 금 보 조 신 청 서

기관(단체)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의 목적					
사업의 내용					

소 요 경 비 재 원

총사업비	기금보조금	자체부담금	후 원 금	기 타

사업 기간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제15조, 제1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금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

[별지 제2호서식]

【 사 업 계 획 서 】

1. 목 적

2. 주요내용

3. 참여인원 및 사업기대효과

4. 보조금 신청내역

(단위:천원)

적 요 (사업 및 품명)	계	자체부담	기 타			산출기초
			소 계	군비보조	기(부)금등	
						※ 세부적으로 각 항목별 산출 근거 제시

5. 기관(단체)활동 실적

사 업 명	활 동 내 용	비 고
○ ○ ○	○ 일시 : ○ 장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행사내용 :	※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전체 기재함

※ 각종자료, 사진등 별지 첨부

6. 기관(단체)구성 현황

임원진	회원수(명)				비고
	계	정회원	준회원	기타	
회장: 부회장: 총무:					※ 회원자격등

7. 기타 참고사항

○ 사업시행후 수입금에 관한 보조금외 부담경비사항(계획)등

○ 설립근거 법령 및 조례 사본

○ 단체의 정관(회칙)

[별지 제3호서식]

정선군사회복지기금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업장소 :
3. 사업기간 :
4. 청구금액 및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계	군비보조	자체부담	기 타			산출기초
				소계	기(부)금	기타	
계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및 정선군사회복지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인)
소재지
대표자
예금계좌번호 (은행)

※ 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예산집행계획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실 행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09. . . ~ 2009. . .

○ 소요예산 : 천원(보조금 : , 자부담 :)

2. 사업목적

○

○

○

3. 주요사업내용

※ 단위사업명별로 간략하게 기재(사업내용에 맞게 조정 사용)

4. 세부추진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5. 기대효과

○

○

○

o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o 연 락 처 : 전화(사무실, 휴대폰) , FAX , E-mail

o 주 소 : (우편번호)

[별지 제5호서식]

예 산 집 행 계 획 서

□ 보조금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 · ·			

□ 자부담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 · ·			

※ 반드시 실행계획서 4번항(세부추진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

[별지 제6호서식]

- 2009 정선군사회복지기금사업 -

정 산 보 고 서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장 소 :

▣ 참여인원 : 명 (회원 명)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자부담)

단체명 : (직인)

ㅇ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인)
ㅇ 연 락 처 : 전화(사무실)	
ㅇ 주 소 :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이자발생액(별도표시) : 원

Ⅱ. 사회복지기금사업 집행현황

1. 보조금(군비)집행내역

○ 현금 영수증 결재(보조예산: 원, 집행액: 원, 집행잔액: 원)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번호	지출 일자
		항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08. 6. 30	375,000	○ 홍보물 구입 - 현수막 35,000원 × 5개 - 어깨띠 제작 2,000원 × 100개	375,000		

※ 작성시 참고사항

①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②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항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③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A4용지에 부착)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지출결의서가 없는 단체는 별도 사유 설명서 제출)

○ 카드 결재(보조예산: 원, 집행액: 원, 집행잔액: 원)

(단위 : 원)

지출내역			지출일자	비고
항 목	내 역	지 출 액		
계				
<작성예시> 임차료	300,000원 × 1회	300,000	2007.3.20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항목	지 출 내 역	지출액	비 고
계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항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Ⅳ.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사업(세부)내용	항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시 담당부서 승인, 자체내부방침 설정 등 기재(관련문서 사본 첨부)

【 정산시 지참물 】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추진실적보고서 1부
③ 지출결의서(사본) 1부
④ 보조금 집행분 증빙 영수증(원본 또는 사본) 1부
⑤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⑥ 자부담 집행분 증빙영수증(사본) 1부
⑦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 2009 정선군사회복지기금 –

추 진 실 적 보 고 서

(사 업 명 기 재)

1.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09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기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월		

〈작성요령〉

○ 가급적 추진실적을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3.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 내용설명의 보다 체계적인 전개를 위해 수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논리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형태로 작성

○ 작성형식은 서술·개조식으로 객관화된 자료제시(계량·수치화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

2009년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1.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1-1 기본원칙
   1-2 주요비목별 편성기준
   1-3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2. 보조금의 회계관리
   2-1 기본원칙
   2-2 예산비목별 집행방법

3. 보조금의 교부
   3-1 교부방법 및 절차
   3-2 사업단체의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4. 보조금 심사기준
   4-1 사업부서 심사
   4-2 예산부서 심사
   4-3 심의위원회 심사

5. 사업비 정산
   5-1 사업비 정산

1.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1-1. 기본원칙

1)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o 보조금 예산은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2)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o 각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기타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3) 보조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단체운영경비 편성 불가

o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비품 구입비,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비(단, 개별법령에 의하여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예외)

o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 단체의 자본형성적 경비는"민간자본보조금"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야 지원 가능

o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o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포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등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4)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o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편성

5) 동일한 비목에 재원을 나누어 편성 불가

o 보조금 예산은 예산비목 설정시 동일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서 편성 불가

➢ 예시) 「○○○사업현황」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 10만원을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1-2. 주요비목별 편성기준

1) 원 고 료

o 원고료는 강사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를 편찬하는 경우와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을 위한 원고에 대하여 편성

〈원고매수 제한〉

· 강의시간 1시간당 A4원고 10매 이내로 제한

※ 원고지 작성시 : A4용지 1매당 200자 원고지 3.5매~5매 정도로 환산

· 시간당 기준매수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단가의 50%지급 가능

예시) A4용지 12매일 경우 지급액 : (15,000원× 10매)+(7,500원× 2매)=165,000원

2) 인 쇄 비

o 인쇄비는 가급적 정부인쇄기준 요금을 적용하고,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

o 제작부수는 배부처, 참석자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인쇄되는 사례 방지

o 지질은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를 사용하고, 고급표지 등은 지양

3) 회 의 비

o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을 편성하고,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억제

o 회의참석 수당은 원칙적으로 단체 내부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1일 1회에 한하여 편성

4) 강 사 료

o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를 준수하여 편성하되, 관외거주 외래강사의 경우 강사료외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별도 편성

➢ 원칙적으로 단체 소속 회원에게는 강사료 지급이 불가하나, 사업내용상 부득이 한 경우 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회원도 지급 가능

5) 단순인건비

o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

- 1일 지급단가(30,000원)를 초과할 수 없음

➢ 본 지급단가에는 식비가 포함되는 것이나, 부득이 식사를 별도로 제공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인 1식(단가 5,000원) 인정

6) 교 통 비

o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경비만 편성

➢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편성 불가

7) 국외여비

o 국제교류사업 추진시 국외여비는 다음기준에 의하여 편성

- 항공료 : 이코노미 요금 원칙(비즈니스 요금 불인정)
- 체제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 현지 시가

8) 통 역 료

o 국제회의 등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센터 기준단가로 편성

9) 기타사항

o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집행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계정별 담당부서에서 심사하여 확정

1-3.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강사료	특별강사	· 전 · 현직 장 · 차관(급) · 전 · 현직 대학총장(급) · 전 · 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인사	· 1시간 2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1급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 · 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 · 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 · 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군과 사전협의)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2급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 · 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급 및 일반3급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3급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 · 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군과 사전협의)	·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보조강사	· 각종 실기 · 실습 보조요원	· 1시간 4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원
	다수인 출강	· 2시간 이하	· 5인 이하 27.5만원 · 6 ~ 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 2시간 이상	· 5인 이하 35만원 · 6 ~ 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3시간 이내 · 3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70,000원 · 100,000원
단순인건비		· 1인 / 1일	· 36,000원 이하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글씨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5,000원
여 비		· 시내여비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박)	· 10,000원 · 실비 · 5,000원 · 25,000원
단체연수 등 합숙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2인1실 1박)	· 5,000원(기간·인원에따라조정) · 30,000원(〃)

2. 보조금의 회계관리

보조금 예산의 집행처리과정(예시)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1) 집행할 대상(물품구입 등)이 보조사업의 목적과 계획서상의 편성 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2)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3) 항목별 예산편성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과정)를 하고
  (4) 물품 또는 용역품을 납품(제공) 받아 검수를 필한 뒤
  (5)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징구한 후 대금을 지불하여야함
- 사업시행계획(물품구입계획 등)품의 → 최저가 조사(견적비교 등)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 · 검수 → 대금지불(계좌입금 등) → 회계장부 정리

2-1. 기본원칙

1)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o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o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 정리(잔액이 없도록 정리)

2) 보조사업비는 당해연도내 집행

o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009.12.31.)까지 집행하여야 함

➪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

3)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o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사업 선정후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사업개시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위반시 회수)

※ 단, 개별지원법에 의하여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중 자부담 능력이 없는 단체는 예외 인정

4) 일괄인출 금지 및 계좌입금 원칙

o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함

※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국토순례행진 등)

o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각 지부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부로의 송금은 반드시 계좌입금 조치하고 사업종료 즉시 지부별로 정산서를 받아야함

5)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대로 집행

o 보조금 예산은 지원결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함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선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함. **단, 자부담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은 불가**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집행 가능하며,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정산하여야한다. **단, 사업비 항목을 운영비 항목으로 변경 지출은 불가**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 등 유사항목간 변경 및 항목간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 불인정

☞ 실행계획서는 사업공모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지원 결정된 보조금액에 맞게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것임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

· 신청부서 : 정선군 주민생활지원실(보조금 교부부서)

· 신청사유 : 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작성, 공문으로 승인신청

6)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o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는 2개이상 업체로부터 징구하여 금액비교

➢ 지원결정후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함

7)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o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군청에 신고 납부해야함

➢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위반시 가산세 납부)

〈 **보조사업관련 원천징수 대상** 〉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1일 단가 8만원 이상)

※ 1일 지급단가가 8만원 이하라도 계속근로연수 3개월 이상일 경우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 강사료, 원고료, 출연료, 회의참석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소득세법 제84조) : 매건마다 1만원 이상의 소득 금액은 반드시 원천징수

8)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로 미인정

o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 인정

➢ 간이영수증 인정 예시 :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벽지 상점 등의 소액지출, 사무용품 등의 소액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등

※ 간이영수증의 지출금액이 고액(1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o 매식비, 숙박비 등 소모성경비는 신용카드로 결재토록 하며, 신용카드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비법인단체는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사용)**

➢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한 전표는 영수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로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으면 예외 인정

o 입금전표는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대체시 환수 대상)

9) 홍보 · 인쇄물엔 사회복지기금 지원 여부 표기

o 전단지, 플래카드, 책자 등 홍보·인쇄물에는 반드시"2009년도 정선군사회복지기금으로 제작"되었음을 표기

➢ 『2009사회복지기금지원사업』 으로 표기가 없는 인쇄물은 정산시 결과물로 인정받을 수 없음(환수대상)

2-2. 예산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인쇄비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참석자수 등을 고려한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집행금액이 많은 인쇄물은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원칙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을 집행하고 회의참석자 식비 등은 자부담 예산으로 집행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원고료	· 세미나, 워크숍 등의 주제발표 등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며,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자제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부득이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 지급시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 원고료 지급액에 대한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 확보 (지출서류에 원고 사본 첨부 보관) · 원고료 지급 예외사항 - 기존 원고의 재활용 및 수정원고 : 원고료 지급 불가 - 타 저작물 복사원고 : 원고료 지급 불가 - 파워포인트 및 프로젝트용 원고는 5매를 일반원고(A4) 1매로 간주 - 목차, 표지, 간지 : 미지급 - 참고문헌, 부록 : 지급
강사료	· 강사의 인적사항,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좌입금 원칙
교통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에 제한이 없는 장기출장이나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경비에 대해서 단체의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등 · 가급적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 ~ 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 · 활동비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처의 영수증 구비를 생략하고, 지출결의서 및 수령자의 영수증(또는 수령날인)으로 회계증빙서류를 간소화 함
국외여비	· 항공료는 이코노미(2등 정액) 요금을 원칙으로 하며, 1등 정액 및 중간 비즈니스 요금은 인정하지 않음 · 체제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토록 하며, 고급호텔 숙박 자제

3. 보조금의 교부

3-1. 교부방법 및 절차

1) 교부 개요

o 교부방법

➢ 사업선정 후 실행계획 제출시 교부

➢ 1회성 행사 등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경우에는 1차에 전액 교부하고,그 외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부

o 교부절차

➢ 지원결정통지(주민생활지원실→사업단체) ⇒ 교부신청서 및 실행 계획서 징구 ⇒ 교부결정 ⇒ 교부통지(주민생활지원실→사업단체)

2) 교부결정시 보조조건 부가

o 사업별로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조건 부가

o 필히 부가하여야 할 조건

➢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정선군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정선군 사회복지기금관리지침 준수

➢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간 소요경비를 재배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선군수의 승인절차 이행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결정시 부담비율에 의한 자체예산 미부담시 환수 조치

〈사회복지기금 교부조건 예시〉

1.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 조례, 정선군사회복지기금 관리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2.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간 소요경비를 재배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선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회계처리기준 미준수 포함)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마. 보조결정시 자부담 비율에 의한 자체예산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 · 서류, 기타재산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통장을 설정하고, 정산결과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분에 대하여는 반환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3-2. 사업단체의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1) 교부신청서 : 1부 [서식 3]

2) 사업실행계획서 : 1부 [서식 4]

- 실행계획서는 사업공모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가 심사결과 지원하기로 조정된 보조금액을 기준하여 실제 추진할 사업계획으로 보완하는 것임
- 제출된 실행계획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산시 기본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수요판단이 필요함

3) 예산집행계획서 : 1부 [서식 5]

- 예산집행계획서는 실행계획서 범위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이 포함되도록 작성
-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보조금예산 경비별 편성기준표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4) 보조금 관리 예금통장 사본 : 1부

o 예금통장은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으로 개설

o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병기

o 종전의 보조사업을 시행해 오던 단체가 동일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액이 없도록 정리한 수 사용

4. 보조금 심사기준

4-1. 사업부서 심사(1단계)

1) 신청단체의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o 구비서류 확인 후 보완 및 참고자료 필요시 추가 요구

2) 대상단체의 적격성 판단

o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o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o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o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o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3) 사업의 적정성 판단

o 동일 · 유사사업으로 타 보조금이나 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업

o 신청단체의 모든 지원 사업비 근거자료 확보 및 제출

4) 사업의 효과성 판단

o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4등급으로 판정

5) 보조금 예산편성의 적정성

o 사업비, 운영비 적정 지원액 판단

o 예산편성 기준 단가 적용 여부

6)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 자부담능력 판단시 고려사항 〉

· 예산편성 내역을 분석하여 항목별 자부담 적정여부 판단
- 통상적으로 단체운영경비는 자부담 원칙
· 사업단체의 재정력 ·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단체의 자부담능력 판단
-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등 성격상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단체 및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예외

7) 전년도 지원사업 평가 결과 반영

4-2. 예산부서 심사(2단계)

1) 신청단체의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o 신청단체의 서류 및 사업부서 1차 심사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o 구비서류 미비 및 참고자료 필요시 추가 요구

2) 신청예산의 적정성 검토

o 사회복지기금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비 판단

3) 지원예정금액 심사 조정

o 신청예산 중 적정사업비를 기준으로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단체(사업)별 지원예정금액 조정

➢ 지원한도액은 신청사업수, 산정된 적정예산액 등을 감안하여 단체별 배정

➢ 사업의 내용 및 단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지원예정액 결정

➢ 단체별 사업 검토내용 작성 및 심사조서 작성

➢ 사업 및 계정별 담당부서 심사 조정액 현황 작성

4) 운영비 지원 검토

o 운영비는 개별법의 지원취지를 감안 지원하되, 엄격하게 심사하여 단체 유지를 위한 필수 경비만 지원

· 사업단체의 운영경비는 회비 등 자체경비로 충당되어야 하며, 이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사업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 구)정액보조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바,
·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운영비 지원규모는 축소해 나갈것임.

5) 전년도 지원사업 평가 결과 반영

4-3. 심의위원회 심사(3단계)

1) 심사서류 사전 배부

o 신청단체의 기초자료 및 사업 · 예산부서 심사서류를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심의위원에게 배부

2) 심의위원 심사서류 검토

o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등을 기초로 사전에 충분한 서류 검토

o 신청사업의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지역사회기여도, 주민욕구충족도 고려

o 사업 및 계정별 담당부서의 검토의견과 심사 조정액 적정성 판단

3) 심의위원회 결정

o 단체(사업)별 지원액은 지원가능 총액 한도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나, 가급적 사업별 적정예산액 범위 내에서 결정

5. 보조금 사후정산 검사

5-1. 사업비 정산

1) 정산개요

o 정산주체 : 보조사업 주민생활지원실

o 정산시기 : 사업시행 시기별 구분

➢ 단기·일회성 및 연중에 종료되는 사업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연간 지속 또는 연말에 종료되는 사업 : 다음해 1월 중

o 제출서식 : 정산보고서

o 정산내용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

o 제 출 처 : 해당 사업부서

➢ 미제출 단체는 익년도 사업선정시 배제

o 정산결과 : 보조금 환수 및 익년도 지원결정에 반영 등

2) 증빙서 편철

o 회계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 · 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o 증빙서류 편철순서 : 단위사업 사이에는 간지를 삽입하여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단위사업 ⇒ 비목 순)

o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함

o 1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편철

➢ 회계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

-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실행계획 수립시 사업비 정산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수요판단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

정선군공고 제2009-35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통지 공시송달공고

우리군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위반으로 과태료를 압류하였으나 장기미반환, 무단방치로 인하여 권리행사통지에 따라 대체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이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 1. 15 ~ 2009. 01. 24(10일간)

2. 공고대상 :

성 명	주 소	반송사유	비 고
안 효 실	대전시 중구 중촌동	수취인불명	
주-에스티로제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수취인불명	

3.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대체압류통지 공시송달
   - 2009년 1월 24일까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농협, 우체국 및 기타납부장소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강원도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교통행정계 (033-560-2512)

2009. 01. 14.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09-38호

공 시 송 달

성 명 : 김 정 수 외 211건(“별첨”)

주소또는거소 : “정선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참조

서류의 명칭 : 납세고지서

서류의 내용 : 200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2008년12월)

위의 서류를 2008년 12월 10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거소 •사무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변경된 납기인 2009년 01월 31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1. 14.

정 선 군 수